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
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5.

발 의 자 : 박홍배 · 김태선 · 김주영
이연희 · 이정문 · 문진석
김영호 · 김태년 · 김현정
박정현 · 서영교 · 신정훈
이광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.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,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·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단서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 법률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(안 제6조의2제1항), 8·9급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의2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930호) 및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93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”을 “「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3급부터 7급까지의 근로감독관은 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 내의 그의 업무 범위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7호부터 제9호까지, 제12호, 제14호 및 제18호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에 한정한다.

제6조의2제2항 중 “지청 및 그 출장소”를 “지청, 출장소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”로, “국가공무원”을 “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 ① 「 <u>근로기준법</u> 」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 <단서 신설>	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 ① 「 <u>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3급부터 7급까지의 근로감독관은 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 내의 그의 업무 범위-----
1. ~ 19. (생략)	----- . 다만, 제7호부터 제9호까지, 제12호, 제14호 및 제18호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에 한정한다.
② 지방고용노동청,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, 노사협력, 산업안전,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	1. ~ 19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 <u>지청, 출장소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

를 수행한다.

③ (생 략)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